

의안번호	2216602
의 퇴 인	박정하 의원
회 답 일	2026. 3. 4.
추계번호	26F07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감면 3년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및 태권도진흥재단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할 경우,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52.2억원(연평균 17.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29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체육진흥기관 등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52조의2)	-17.4	-17.4	-17.4	-52.2	-17.4
합계	-17.4	-17.4	-17.4	-52.2	-17.4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 체육진흥기관 등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 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개정안)2029.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52조의2)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및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체육진흥기관 등”)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 일몰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
- 2024년 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재산세 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2024년 체육진흥기관 등 취득세·재산세 감면 실적: 17.4억원(95건)

3. 재정수반 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제도개요

- (제도개요) 체육진흥기관 등 8개 기관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여 지역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과 국민의 건강 증진, 대중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감면내용 및 감면율
 -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50%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6년 12월 31일→(개정안) 2029년 12월 31일

□ (제도연혁) 2018년부터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체육진흥기관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별도로 신설되어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재시행된 것임

- (2018년 이전) 문화예술체육단체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제1항¹⁾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전액(100%) 면제
- (2018년~2023년) 2017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일부개정²⁾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³⁾에 따른 공공기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별도의 고시는 없었음
- (2024년 이후) 체육진흥기관 등 8개 기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로 별도로 신설됨
 -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50%

□ (감면실적)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에 따른 재산세·취득세 감면실적은 17.4억원임

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4477호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11호, 2016. 12. 30, 일부개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2024년 체육진흥기관 등 취득세·재산세 감면 실적: 17.4억원(95건)

[표 2] 2024년 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실적

(단위: 억원, 건)

	2024년
세액	17.4
건수	95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이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에 따른 재산세·취득세 감면액은 전체 문화예술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면 실적이며, 체육진흥기관 등 8개 기관에 대한 감면 실적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음

(2) 추계방법

- (추계방법) 체육진흥기관 등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

- 2024년 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재산세 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2024년 체육진흥기관 등 취득세·재산세 감면 실적: 17.4억원(95건)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및 태권도진흥재단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할 경우,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52.2억원(연평균 17.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29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체육진흥기관 등이 체육 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한 취득세·재 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52조의2)	-17.4	-17.4	-17.4	-52.2	-17.4
합계	-17.4	-17.4	-17.4	-52.2	-17.4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김주현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주현	02-6788-4836	kjh@assembly.go.kr